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0가합808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최승록, 김현진, 이동철, 최재영

피고B 주식회사

변론 종결2022. 5. 25.

판결 선고2022. 6. 22.

주 문

1. 이 사건 소중 129,148,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양주시 C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12. 26. 피고와 위 신축공사 중 E동(이하 'E동'이라 한다)의 가설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81,1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8. 12.부터 2019. 3. 28.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9. 3. 28. 자재입고 지연 및 기상악화를 이유로 공사기간을 2019. 5. 31.까지로 연장하는 건설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E동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8. 12. 26. 피고와 위 신축공사 중 F동(이하 'F동'이라 한다)의 철골 및 판넬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507,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8. 12.부터 2019. 3. 28.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9. 3. 28. 자재입고 지연 및 기상악화를 이유로 공사기간을 2019. 5. 31.까지로 연장하는 건설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F동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E동 하도급계약'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대금의 지급

가. 선금금: 없음

나. 기성부분금: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기성청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익월 피고가 발주자(건축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받은 후 7 영업일 이내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피고가 발주자(건축주)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8. 하자보수보증금률: 계약금액의 3%

10. 지체상금률: 0.1%/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본문)

제21조[대금지급]

1. 원고는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는 기성부분금 또는 준공금을 검사완료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하자담보]

1.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 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서 피고에게 납부한다.

(1) G공제조합, H공제조합, I협회가 발행하는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5)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6)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제24조[이행지체]

1.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으로 인한 경우

(2) 원고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나. 기성금의 지급

1) 피고는 2019. 1. 3. 원고에게 이 사건 E동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기성금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9. 1. 3.부터 2019. 5. 2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F동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6회에 걸쳐 873,876,493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원고 채권자들의 지급 청구

1) 홍성세무서장은 2019. 8. 1. 원고의 국세채납액 117,095,130원(= 2019. 3.분 근로소득세 13,469,330원 + 2019. 3.분 부가가치세 35,004,430원 + 2019. 4.분 부가가치세 34,146,710 + 2019. 5.분 부가가치세 34,474,66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위 채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J은 2019. 12.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중 12,053,845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K은 2019. 7. 10.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중 50,000,00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L은 2019. 7. 11. 위 공사대금 채권 중 110,910,00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M은 2020. 6. 26. 위 공사대금 채권 중 126,440,00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위 각 가압류결정은 각 결정일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N은 2019.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원고에게 제공한 식사대금 3,661,000원에 관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5) O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하수급인으로서 원고가 작성한 직불요청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하도급직불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 7. 28.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있을 경우 O에게 먼저 38,901,12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6) 주식회사 P은 2018. 12. 21. 원고와 철강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P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미수금 68,273,1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2. 3. 22. 지급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E동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기성금으로 2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661,100,000원(= 공사대금 881,100,000원 - 기성금 220,000,000원)이다.

2) 이 사건 F동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중 철골 공사를 완료하고 판넬 공사를 상당 부분 완료하여 전체 기성고 비율이 85%이고, 피고로부터 기성금으로 873,876,493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407,073,507원[= 1,280,950,000원(= 공사대금 1,507,000,000원 × 기성고 비율 85%) - 873,876,493원]이다. 또한 이 사건 F동 하도급계약에 관한 추가공사대금으로 내화페인트 공사비용 125,164,000원과 원고가 지출한 비용인 EPS 판넬 자재구입대금 60,000,000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다.

위 공사대금 합계 1,253,337,507원 중 피고가 직불한 금액인 389,9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일부 청구로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E동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801,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위 공사대금 중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레미콘 입고 물량 감소 부분 71,834,400원(= 65,304,000원 + 부가가치세 6,530,400원), 레미콘 타설 물량 감소 부분 13,182,724원(= 11,984,295원 + 부가가치세 1,198,429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층고 변경 부분 17,556,495원(= 15,960,450원 + 부가가치세 1,596,045원), 비계해체 비용 7,286,598원(= 6,624,180원 + 662,418원), 비계해체를 위한 지게차 사용료 198,000원(= 180,000원 + 부가가치세 18,000원)은 감액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F동 하도급계약 중 판넬 공사를 포함한 일부 공사는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고가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미지급공사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 752,400,000원(= 684,000,000원 + 부가가치세 68,400,000원)은 감액되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은 피고가 동의한 적 없으므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총 1,442,300,000원을 변제하였다.

4)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공사대금에서,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비 중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282,830,471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8,283,047원, ②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43,269,000원(1,442,300,000원1) × 3%), ③ 피고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83,926,940원2), ④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철근대금을 피고가 연대 보증한 금액 68,273,171원, ⑤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폐기물 처리비용 20,000,000원, ⑥ 피고가 직접 공사한 뽐칠 공사비용은 각 감액되어야 한다.

5) 원고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은 홍성세무서가 117,095,130원, J이 12,053,845원을 각 압류하고 있고, K이 50,000,000원, L이 110,910,000원, M이 126,440,000원을 각 가압류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에게, N은 원고에게 제공한 식사대금 3,661,000원을, O은 하도급 직불대금을 38,901,12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각 금액도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참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홍성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채납액 117,095,13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사실, J이 2019. 12. 2.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중 12,053,845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위 1. 다. 1), 2)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홍성세무서의 압류금액 117,095,130원, J의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금액 12,053,845원 및 이에 대한 위 압류통지 또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위 각 압류통지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129,148,975원(= 117,095,130원 + 12,053,84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E동 하도급계약에 의한 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E동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881,100,000원 중 아래와 같이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 80,100,000원, 미시공 된 부분 중 총고 감소 부분 17,556,550원, 비계 해체 비용 6,624,180원, 위 비계해체를 위한 지게차 사용료 180,000원, 레미콘 입고 물량 감소 금액 65,304,000원, 레미콘 타설 물량 감소 금액 11,984,295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시공을 완료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여부를 판단한다.

가) 계약금액 변경 부분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2. 26. 체결된 이 사건 E동 하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이 881,100,000원(= 801,000,000원 + 부가가치세 80,100,000원)으로 기재된 점, 2019. 3. 28. 체결된 위 건설공사 변경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 사유만 기재되어 있고 공사대금 변경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변경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801,000,000원이 이 사건 E동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피고도 이 사건 E동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881,100,000원임을 전제로 정산서를 작성한 점(을 제3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E동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881,100,000원이고 다만 위 변경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801,000,000원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E동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801,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미시공 부분

(1) 총고 감소 부분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E동의 총고를 일부 낮추어 시공한 사실, 원고는 2019. 7. 1. 피고에 E동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총고 변경을 이유로 17,556,550원(= 15,960,500원 + 부가가치세 1,596,050원)을 감액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E동의 총고를 낮추어 시공하고 위 시공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E동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7,556,550원(= 15,960,500원 + 1,596,050원)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비계해체 및 지게차 부분

피고는 원고가 비계를 해체하지 않아 지출한 비용 6,624,180원과 위 비계해체를 위한 지게차 사용료 180,000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작성한 정산총괄표(갑 제4호증) 5면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 중 '비계해체 -3,300,000원'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E동 공사 완료 후 비계를 해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비계를 해체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 적어도 갑 제4호증에 기재된 3,300,000원은 피고가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사대금에서 3,630,000원(3,300,000원 + 부가가치세 330,000원)은 감액되어야 한다.

(3) 레미콘 물량 감소 부분

피고는 E동 공사에 사용된 레미콘 물량이 당초보다 감소함에 따라 공사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동 공사에 사용된 레미콘 물량이 줄었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E동 공사의 레미콘 물량을 감소시켜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레미콘물량이 2,196㎥에서 1,245㎥로 40% 이상 감소하였다는 것인데,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있어 레미콘이 이처럼 감소하였다면 상당한 부분의 설계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이와 관련된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E동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은 859,913,450원(= 881,100,000원 - 17,556,550원 - 3,630,000원)이다.

2) 이 사건 F동 하도급계약에 의한 청구 가) 미지급 공사대금

공사 중단 당시 미완성부분의 시공 상태가 어느 정도였던가에 따라 건물 전체의 기성고가 가려지는 것이라면 위 미완성부분의 시공정도는 증거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카26232 판결 등 참조). 기성고 비율 및 기성 공사비에 관한 입증책임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원고는 F동 공사와 관련하여 철골공사는 시공을 완료하였고 판넬 공사도 대부분 시공하여 전체 기성고 비율이 85%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이 752,400,000원(= 684,000,000원 + 부가가치세 68,400,000원)인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이 752,400,0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752,400,000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F동 공사와 관련하여 기시공 된 부분의 공사대금이 752,400,000원인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752,400,000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F동 공사 기성고 비율이 49.92%(= 752,400,000원 / 1,507,000,000원,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를 초과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F동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1,507,000,000원 중 철골 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이 843,667,704원, 판넬 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이 663,338,060원임을 전제로 철골 공사 부분은 시공이 완료되어 적어도 843,667,704원은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F동 하도급계약서에서는 철골 공사와 판넬 공사의 공사대금을 나누어 정하지 않고 하나의 공사대금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계약에 근거가 된 내역서, 기성고 비율 산정을 위한 수량, 단가 산출 근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철골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성고가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증인 R은 판넬 시공 전 철골 부분 시공이 완료 되었고 원고가 한 판넬 공사의 기성고 비율이 70% 이상이었다고 증언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하다.

그러나 증인 R은 수급인의 공사가 중단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성고 비율을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는 점(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참조)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갖고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넬 시공에 대한 대략적인 공정률을 추측하여 증언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R은 '저것을 50%라고 해도 되고, 90%라고 해도 되는데'3) 라고도 증언하여 공정률조차 정확히 증언하고 있지 못하다.

③ 원고는 2019. 8.초까지 F동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기성고가 적지 않다고 주장하나, 증인 R은 원고가 2019. 7.초까지만 F동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2019. 6. 28. '공사가 중단되거나 현장 진행에 공사가 문제 되었을 시 판넬 공사는 건축주에게 계약 이행하는 것에 이의 없음을 확인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D가 2019. 7. 11. 위 각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원고의 공사 중단을 요청하여, 피고가 2019. 7. 12. 원고에게 공사 중단을 요청한 점, D는

2019. 7. 16. 주식회사 S에 판넬 공사와 관련된 대금 195,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위 판넬 공사를 완공한 점,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기 이전부터 판넬 대금은 피고가 직접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 및 공정률까지 원고가 F동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추가 공사 부분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시간용 내화페인트로 상당 부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시간용 내화페인트로 변경하여 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F동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1시간용 내화페인트를 시공하기로 정하였거나, 원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위 내화페인트 시공을 2시간용 내화페인트로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동은 처음부터 2시간용 내화페인트가 시공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착오로 1시간용 내화페인트를 시공하였다가 시공을 변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시공 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공사대금이 125,164,000원이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EPS 판넬 자재구입대금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4. 16. T에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T에 지급한 금원이 F동 공사를 위한 판넬 자재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F동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은 752,400,000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변제 주장 부분 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부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 3. 이 사건 E동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기성금 2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9. 1. 3.부터 2019. 5. 29.까지 이 사건 F동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6회에 걸쳐 기성금 873,876,493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위 금액은 피고가 작성한 을 제8호증의 피고가 원고 계좌로 지급한 금액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중 1,093,876,493원이 변제로 소멸되었다.

나) 피고 또는 D가 원고의 채권자에 지급한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또는 D가 원고의 채권자인 하도급업체 또는 거래업체에 지급한 대금이 389,910,000원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위 금액은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인 348,865,130원4) 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중 389,910,000원은 변제로 소멸되었다.

2)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 1,612,313,450원(= 이 사건 E동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859,913,450원 + 이 사건 F동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752,400,000원)에서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금액 129,148,975원(= 117,095,130원 + 12,053,845원)5)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변제로 소멸한 금액 1,093,876,493원, D 또는 피고의 원고 하수급인 또는 거래처에 대한 변제로 소멸한 금액 389,910,000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다른 주장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129,148,975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석재

판사이유섭

판사홍인

1) 피고가 추산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합산액

2) 피고는 Q에 공사 지연으로 229,090,000원의 지체상금을 부담하였고, 피고 공사 중 원고 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34.64%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으로 83,926,940원(= 229,090,000원 × 34.64%)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녹취서 요지 22면 참조

4)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1,442,741,623원에서 원고 계좌로 직접 이체한 1,093,876,493원을 뺀 금액이다.

5) 위 압류, 추심명령이 있었던 전후로 피고의 변제가 있었으나,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피고의 변제 중 시기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위 압류, 추심 명령에 따른 금액과 변제에 따른 금액을 빼면 원고의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압류, 추심 명령 전후 변제 금액을 나누는 것이 실익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제 시기와 무관하게 압류,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먼저 제외한다.